

2025년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및 서비스 안내

출생



지원사업

명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처(문의처)
출산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 180일 미만일 경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둘째아부터 :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김포시 보건소(☎031-5186-4155)
부모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0~1세, 2022. 1. 1. 이후 출생아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지원) 	0~11개월 : 월 100만원 12~23개월 : 월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24~최대 8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보육료 및 유아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영유아 (만0~5세) 	연령별 차등지원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0~8세 미만(95개월) 모든 아동 	매월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첫만남 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사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거주) 	출생아 1인당 50만원 (김포시 지역화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보건소(☎031-5186-41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보건소(☎031-5186-4152) ■복지로(www.bokjiro.go.kr)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김포시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10만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민원24(gg24.gg.go.kr) ※ 2025년 3월부터 신청 ■김포시 축산과(☎031-5186-4305)
영유아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후 4개월~7개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보건소(☎031-5186-4155)
경기 I-PLUS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15세 이하인 가정 	협력가맹점 할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내 농협은행 ■경기 I-PLUS카드 (www.ggiplus.bccard.com)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만3개월~만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아이돌봄 (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 아이돌봄 (월 80 ~ 2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가족센터(☎031-996-5922)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기타사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신청 가능

-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번)
- (셋째아 이상) 도시가스요금 감면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사 (서울도시가스 ☎031-984-8008 인천도시가스 ☎1600-0002)
- (셋째아 이상) 수도요금 감면 : 김포시맑은물사업소 (☎031-5186-4435)

아동·보육 관련 기관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985-1901) : 가정양육 지원, 장난감대여, 맘카페 운영 등
- 김포시가족센터(☎031-996-5920) : 가족상담 ·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김 포 시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2025년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및 서비스 안내

사 망



지원사업

명 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처(문의처)
화장장려금	■사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최대 50만원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제비	■생계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80만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사항

명 칭	신고기한	관련기관
재산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청구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사망자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취득세·등록세 신고	■부동산 : 상속개시일(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김포시 취득재산세과 (☎031-980-2840)
	■자동차 : 상속개시일(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김포시 차량등록과 (☎031-5186-4928, 4930)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김포세무서(☎031-980-3200) ■국세청(☎126)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상속개시일(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김포시 차량등록과 (☎031-5186-4918)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상속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사망자의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 출금(자동이체포함)등이 제한됩니다.

재산조회 항목	신청인 자격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 ■ 국세 ■ 지방세 ■ 연금 ■ 공제회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상속인 : 자녀, 배우자 - 제2순위상속인 : 부모, 배우자 - 제3순위상속인 :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민원여권과 (☎031-980-2711~2, 2838)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www.gov.kr) (☎1588-2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 상속인만 가능 ·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번호 안내</p> <p>금융감독원(☎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국민연금공단(☎1335), 국세청(☎126)</p>

기타사항

- 유족연금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 예금보험지급청구 : 해당 금융기관
- 영업자 지위승계 : 허가신고 등록관청
- 신분증 반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 해당 업체



김 포 시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2025년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및 서비스 안내

혼인



지원 사업

명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처(문의처)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주소를 둔 예비부부, 신혼부부 	검진비 무료 (최초 임신 준비 시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보건소 (☎031-5186-4032)
임산부 기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시 12주 이내 관내 임산부 	임산부 무료검진	
엽산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혼인관계 부부 중 관내 임신 준비여성 	1개월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보건소 (☎031-5186-4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확인 후~12주 이내 관내 임산부 	최대 2개월분 (신청일 기준, 소급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보건소 (☎031-5186-4159)
철분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16주 이후 관내 임산부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 (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모든 난임부부 (법률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 및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와 비급여 일부, 약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보건소 (☎031-5186-4153)
임신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50만원 (임신시마다 1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보건소 (☎ 031-5186-4160) 정부24 (www.gov.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보건소 (☎031-5186-4152) 복지로 (www.bokjiro.go.kr)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문화서비스 및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가족센터 (☎031-996-5920)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한국어 및 직업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가족센터 (☎031-996-5920)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법률,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여성 취업지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미취업 여성에게 전문적인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996-7607~13)

신고 사항

명칭	내용	신청처(문의처)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개 명



(변경)신고사항

명 칭	내 용	필요서류	신청처(문의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반명함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변경	개명된 이름의 인감도장 개명 신분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전면허증	면허증 재발급	반명함사진 1매, 개명 주민등록증 기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김포경찰서 (☎031-950-2125) ■운전면허시험장
여권	여권 재발급	여권용 사진 2매, 개명 신분증, 기존 여권	■김포시 민원여권과 (☎ 031-980-2700)
등기부등본	등기부 명의 변경		■물건지 관할 등기소
통장, 카드, 보험	명의 변경	기본증명서(상세), 개명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해당 은행, 카드사, 보험사
학교	학생증 등 변경		■해당 학교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개명 신분증	■김포시 차량등록과 (☎031-5186-4925)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병무청	전산상 자동으로 바뀌나, 개명된 이름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2주 후 해당 공단 및 병무청에 확인해 볼 것을 권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기 소유자 변경	전화기 명의 변경	개명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해당 통신사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사업자 등록증 명의 변경	구 사업자등록증, 개명 신분증	■김포세무서 (☎031-980-3200)

2025년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및 서비스 안내

입양



지원 사업

명칭	지원대상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급금액 : 월 20만원/인(만18세까지)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급금액 : 200만원(1회)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양육보조금(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 721,000원 ■경중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634,000원
		의료비	■연간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이내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1주 지원) ※ 우측 세가지 중 택 1	1. 가정 내 보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 아동생필품비 포함(10만원)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35만원)
		2.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40만원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3.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최대 140만원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신청처(문의처)

김포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980-2830



김 포 시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2025년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및 서비스 안내

이 혼



신고사항

명칭	내용	신청처(문의처)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정부24(www.gov.kr)

※ 이혼신고와 별개로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등본에 반영됩니다.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사업

※ 상담전화 ☎1644-662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명칭	지원기준	지원금액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자녀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단,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월 1.5만원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단,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 수급자 제외)	가구당 연 2회 6만원

기타지원 및 세부사항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 참고



김 포 시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100% 활용하기



포털사이트 "전자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검색

전자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365일 24시간 인터넷 신고 가능
증명서 발급 무료



※ 인터넷 신고방법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신고 종류	신고 자격	첨부 서류
출생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중의 자녀 : 부 또는 모 혼인외의 자녀 : 모 	출생증명서
개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명허가 받은 사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법원 결정문
등록부정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 소를 제기한 사람 	법원 결정문
국적취득자의 성분창설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본창설허가를 받은 사람 	법원 결정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 소를 제기한 사람 	법원 결정문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